

2014.12.12

**'한·호주 FTA, 국회 비준동의 완료, 12일 발효'**

우리나라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·호주, 한·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. 정부는 12월 3일 국내 절차 완료를 알리는 서한을 호주와 교환하여 **12월 12일 한·호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습니다**.

\* 한·호주 FTA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질 타결하고 올해 4월 8일 서명하였음

현재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·호주 FTA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며, 한·호주 FTA 발효 시 우리나라의 10번째 FTA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.

한·호주 FTA는 **양측이 10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**해 현재 303억 달러 수준인 호주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무엇보다 호주로부터 유연탄, 원유 등 에너지·자원의 수입이 많아 앞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물론,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한·EU FTA 이후 유럽産 원유의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호주의 FTA로 호주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2014.12.12

## 주요내용

### 1. 양허 현황

#### □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

- ※ 품목수 기준 : (우리) 94.3%, (호주) 100%
- ※ 수입액 기준 : (우리) 94.6%, (호주) 100%

#### [공산품]

-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
- ※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9.4%, 수입액 기준 100%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
- ※ 우리는 10년내 품목수 기준 99.4%, 수입액 기준 99.9%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

#### [농산물]

- 호주는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
-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,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 제외, 저율할당관세, 농산물 세이프가드, 계절관세, 장기 관세 철폐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

### 2. 협정관세 적용

#### □ 협정 발효 적용시점

##### - 협정발효일 (14년 12월 12일)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

-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가능
-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
-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,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

2014.12.12

## 주요내용

### 3. 원산지증명 방식

#### □ 발급방식

- 우리나라 : 자율발급
- 호주 :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

#### □ 발급주체

- 자율발급 : 수출자 및 생산자
- 기관발급 : 호주 상공회의소(ACCI) 및 호주산업협회(AIG)
-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
-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서면 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기초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 가능

#### □ 발급형식

-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단

#### □ 원산지 신고서(증명서)의 유효기간

- 자율발급 : 서명일부터 2년
- 기관발급 : 발급일부터 2년
-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 가능 (서명일 또는 발급일부터 2년)

#### □ 포괄원산지증명 유효기간

- 포괄증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 (FROM ~ TO)  
-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음
-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